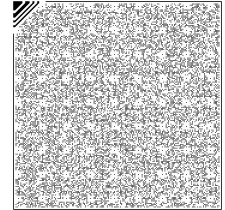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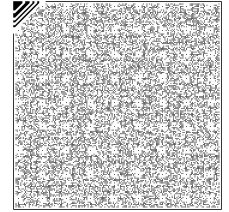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06호, 2023.8.25.)
-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6월) (보험급여과-2539호, 2023.5.26.)
- 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4호, 2023.5.26.)
- 라.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 마.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623호, 2023.6.1.)
- 바. 2023년 제13차(7.26.) 및 제15차(8.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1.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0시부터 종료

붙임: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3. 8. 30.
 협조자 행정사무관 **박소영** 보건사무관 **배윤영**
 시행 보험급여과-4211 (2023. 8. 3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7 팩스번호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